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김지연 의원 발의】



2025. 03. 24.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91호로 2025년 3월 10일 김지연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3.12.~2025.3.1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 뿌리산업이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기존 금속 소재 중심의 6개의 기반 공정과 차세대 공정 기술 8개를 포함¹⁾하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뿌리산업의 범위】



1) 기존 금속 소재 중심의 기반공정(6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차세대 공정기술(8개): 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지류공정,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설계

- 긴 시간 동안 뿌리산업은 3D업종(Dangerous, Dirty, Difficult)으로 인식되어 그 역할과 주요성이 저평가되었으나 2011년 7월 정부에서는 「뿌리산업법」을 제정하여 제조업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간을 마련했으며 서울시에서도 지역 내 뿌리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별도의 조례를 2024년 5월 제정함.
- 관련 조례 입안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총 15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뿌리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區)에는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라는 특수성을 가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는 의미가 있음.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2)에 따라 상공업 등 지역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보고 있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3)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기에 상위법률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2)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3)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등 조례 전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뿌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뿌리산업 정책 위원회와 그 구성, 안 제10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내용을 담아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명맥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이점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기술·인력·재정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에서는 열악한 작업환경, 임대료 상승, 생태계 붕괴로 인해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안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 뿌리기업 이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노력 규정을 포함함.

나. 종합계획의 수립

제 정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뿌리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뿌리기업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정부에서는 2011년 7월 「뿌리산업법」 제정 이후 제3차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발 맞춰 **안 제5조**에서는 우리 구(區)의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 뿌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 정 안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 뿌리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
3.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
4. 뿌리기업 이전을 위한 컨설팅 및 자문회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6조 및 제7조**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뿌리기업의 이전을 위한 컨설팅 및 자문회의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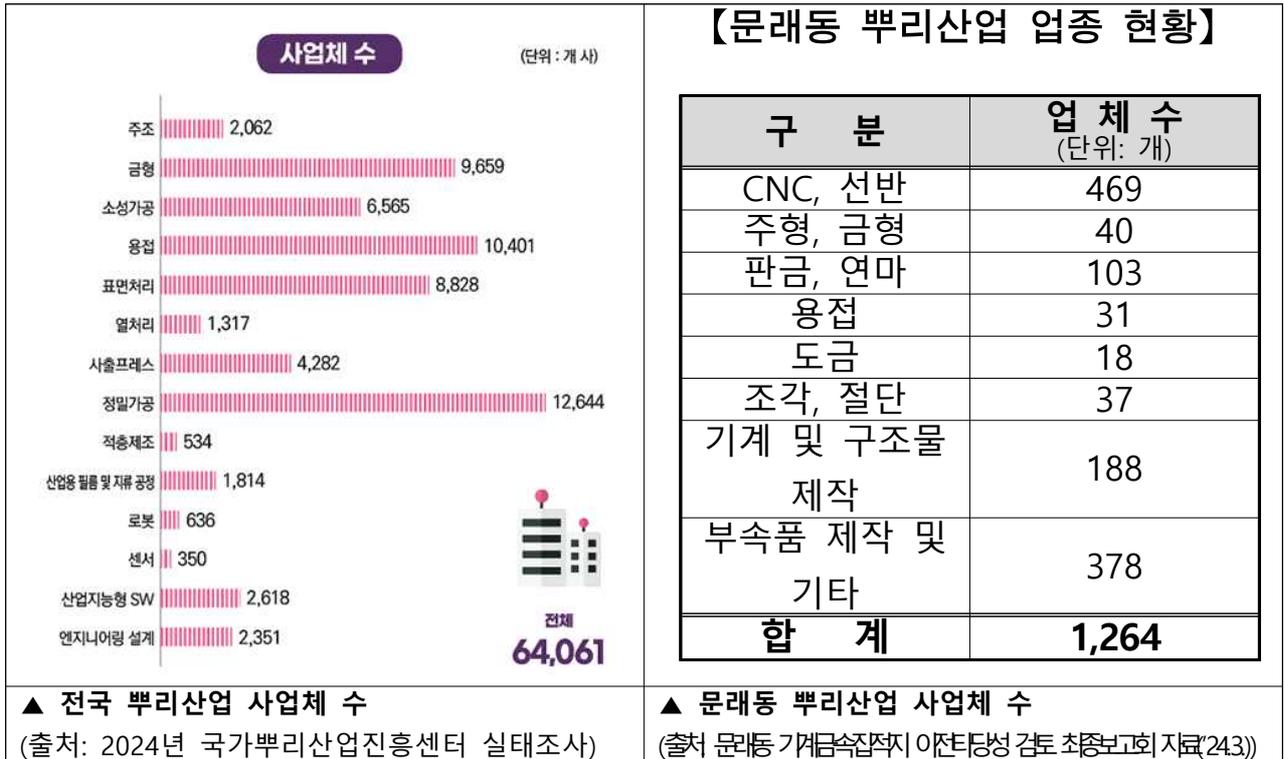
라. 뿌리산업 정책위원회

제 정 안
<p>제8조(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과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 육성 및 뿌리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뿌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등포구의회의 의원 2. 뿌리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주사가 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 **안 제8조**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 관련 정책 자문 기능을 하는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해당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종합의견

- 전국 6만 1천여개의 뿌리기업 중 서울시에 4천 5백여개의 기업이 소재해 있으며 그중 1천 2백여개 업체가 문래동에 소재해 있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뿌리산업에 대한 비중이 큰 현실임.



- 본 조례안에 따르면 1,264개의 뿌리산업 사업체의 발전 기반 조성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해 5년 주기의 종합계획 및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뿌리산업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 사업, 계획 등의 자문을 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이 기대됨.
- 다만, 우리 구(區)의 문래동 기계 금속 집적지는 정비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공장 확장, 신규 장비 도입 등의 시설 환경 개선 등이 어려운 현실과 맞물려 집적지 이전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아 집단 이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는 장기적으로는 관내에 뿌리산업 사업체가 탈출하게 되므로 우리 구(區)의 범위에서만 본다면 모(母)법인 「뿌리산업법」 및 「서울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가지는 뿌리산업의 육성과 보호라는 목적과 다소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음.
- 그러나 뿌리산업체와 전국 단위의 범위에서 본다면 지속 가능한 뿌리산업 생태계 유지를 전제로 한 집단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 그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 의의가 있음.

참 고 자 료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삭제 <2014. 1. 21.>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